

2022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종합안내서

2022. 3.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시험평가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목 차

1. 시험개요	1
2.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2
<input type="checkbox"/>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2
<input type="checkbox"/> 응시원서 접수안내	3
<input type="checkbox"/> 응시수수료 감면 및 취소신청	6
3. 출제정보	9
<input type="checkbox"/> 시험정보	9
<input type="checkbox"/> 예시문항	10
4. 시험시행	11
5. 합격자발표	16
6. 자격증 발급	17
7. 기타	18
<input type="checkbox"/> 증명서 발급 안내	18
<input type="checkbox"/> 답안카드 열람 안내	19
<input type="checkbox"/> 응시확인서 안내	19
<input type="checkbox"/>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률	20
<input type="checkbox"/>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분석결과	20

1. 시험개요

□ 2022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구분		2022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	제38회	인터넷: 2021. 12. 10.(금)~12. 17.(금) 방 문: 2021. 12. 18.(토)
		제39회	인터넷: 2022. 3. 11.(금)~3. 18.(금) 방 문: 2022. 3. 19.(토)
		제40회	인터넷: 2022. 6. 3.(금)~6. 10.(금) 방 문: 2022. 6. 11.(토)
		제41회	인터넷: 2022. 8. 26.(금)~9. 2.(금) 방 문: 2022. 9. 3.(토)
	응시 수수료	• 32,000원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접수 : [국시원 홈페이지] - [응시원서접수]메뉴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 • 방문 접수 :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별관 (원서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 공휴일 제외) 		
응시표 출력기간 (※ 인터넷접수자에 한함)	제38회	2022. 1. 19.(수) 부터 시험 당일	
	제39회	2022. 4. 13.(수) 부터 시험 당일	
	제40회	2022. 7. 6.(수) 부터 시험 당일	
	제41회	2022. 10. 5.(수) 부터 시험 당일	
시험시행	일시	제38회	2022. 2. 19.(토)
		제39회	2022. 5. 14.(토)
		제40회	2022. 8. 6.(토)
		제41회	2022. 11. 5.(토)
	장소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정보] - [직종별 시험정보] - [시험장소]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지참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합격자 발표	일시	제38회	2022. 3. 8.(화) 10:00
		제39회	2022. 5. 31.(화) 10:00
		제40회	2022. 8. 23.(화) 10:00
		제41회	2022. 11. 22.(화) 10:00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정보] - [합격자조회]메뉴 •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SMS 통보 	

2.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 과정,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과정, 경력자 과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안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를 참조바람

응시자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0.6.19.>

1.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그 밖에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②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결격사유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원서 접수 안내

■ 인터넷 접수

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 회원가입 : 입력사항(이름,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응시표 출력 등에 사용
- 연락처 : 연락처1(휴대전화번호), 연락처2(자택번호), 이메일 주소 입력
- ※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

- 실명인증

- 실명인증
 -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 ②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하므로 (주)코리아크레딧뷰로 (02-708-1000)에 문의
- 원서접수 내용은 접수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 응시원서 접수 :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

- 입력사항 : 사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응시자격, 교육기관, 이수기간, 이수시간, 응시지역
- ※ 주소 : 실제 거주지를 입력하여도 관계없습니다.
- ※ 사진파일 등록 : 등록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 사용됩니다.

- 사진준비

- 사진
 - ①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사진
 - ② jpg, bmp, png 포맷
 - ③ 276*354 픽셀 이상 크기
 - ④ 해상도 200dpi 이상(600dpi 이상 권장)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감면자격확인] 중 선택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접수결과 확인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 영수증 발급 : <http://www.tosspayments.com> - [결제내역확인]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응시원서관리] - [응시원서선택] - [응시원서수정] 메뉴
- 수정 가능 기간 및 범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응시원서 접수기간~시험장소 공고 7일 전 : 응시지역
- 마감~시행 하루 전 :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교육기관명 등
-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와 주민등록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 - [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참고)

응시표 출력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응시원서관리]-[응시원서 선택] - [응시표출력]
- 기간 : 시험장 공고일부터 시험 시행당일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 방문접수



방문 접수처

국시원 별관 고객지원센터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방문 접수 시 준비 서류

- 응시원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 - [서식모음]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참고)
- 동일 사진 2매(3.5*4.5cm크기의 인화지로 출력한 컬러사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 - [서식모음]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참고)
- 응시수수료(현금 또는 카드결제)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 마감 안내 : 방문접수 기간 중 18:00까지

응시원서 사진 관련 유의사항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응시수수료 감면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는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

- 응시수수료는 응시수수료 결제 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전액 감면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내에 별도신청을 통해 감면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방법, 신청장소 및 기간, 제출서류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
 - ※ 방문접수자의 접수이력 확인 방법 : [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과거시험 정보찾기] - [실명인증]
-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기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마감일 이후 7일까지
 - ※ 감면 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함

□ 응시취소 신청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 및 본인인증 후 신청

※ 방문접수자의 접수이력 확인 방법 : [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과거시험 정보찾기] - [실명인증]

방문, 우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팩스 : 02-2251-6329

제출서류 :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추가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제출

응시취소 및 환불 신청 마감일

인터넷 신청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까지

방문 신청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근무시간(18:00)까지

우편 신청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분까지

팩스 신청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분까지

※ 환불 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함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환불금액	번호	환불 사유	신청기한	제출서류
응시수수료의 100%	1	접수마감일 후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후 7일까지	-
	2	시험일 이전 본인의 군입대	시험일 후 30일까지	입영통지서
	3	본인, 형제, 자매, 자녀가 시험일에 결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또는 결혼증명서류
	4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전염성 있는 질병으로 의사진단에 따라 자가 격리된 경우(시험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입퇴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5	시험일 이전 본인의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류 또는 사망진단서
	6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가족의 사망		
	7	천재지변 또는 국시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개별안내
	8	이 외에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별안내
응시수수료의 50%	・ ‘기타 응시수수료의 100%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100% 환불기간 경과 후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을 한 경우			
※ 3, 4호의 경우 시험일이 사유해당일과 중복되는 경우에 한함. ※ 6호의 사유 중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를 준용함. ※ 2호 내지 8호에 해당하지만 시험에 응시한 자는 환불 불가함. ※ 국시원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국시원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환불 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한다.				

3. 출제정보

□ 시험정보

시험과목, 문제수, 배점 및 시험시간, 문제형식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장시간	시험시간	1문제당 배점	문제형식
1	1. 영양보호론(필기시험) [35] (영양보호개론, 영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영양보호각론 및 특수영양보호각론) 2. 실기시험 [45]	09:30	10:00~11:30 (90분)	1점	객관식 5지선다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출제범위\(링크\)](#)

□ 예시문항

1. 치매·중풍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급식, 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입소정원이 9인 이하인 노인복지시설은?

- ① 양로시설
- ② 노인복지관
- ③ 노인복지주택
- ④ 노인요양시설
- 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는 감염성 질환은?

- 처방받은 연고를 밤에 바른 뒤, 다음 날 아침에 씻어 낸다.
- 사용한 침구류는 뜨거운 물에 세탁하여 햇볕에 충분히 말린다.
- 가족들도 반드시 함께 치료를 받는다.

- ① 옴
- ② 머릿니
- ③ 피부습진
- ④ 대상포진
- ⑤ 알레르기성 피부염

4. 시험시행

□ 시험방법

- 시험은 지필시험 방식으로 응시자는 배부된 문제지를 받아 답안카드에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문제 및 가답안의 공개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로부터 5일간 공개하며, 일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은 시험문제지의 ‘응시자 안내사항’을 참고
 -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최종 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은 심사에서 제외됨
 - ※ 방문접수자의 가답안 확인 방법 : [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과거시험 정보찾기] - [실명인증]
-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자는 시험일 응시자 입장완료시간(시험시간표 참조)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함.
 -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 불가
 -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 불가
 - 일부 시험장의 경우 시험시작 2시간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
-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 불가

신분증의 범위: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만료일 이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불인정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

-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스마트)이어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를 제출할 것
 - 시험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교시 성적을 ‘0점’ 처리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시간에는 답안카드 작성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적절히 배분
-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도한 수분섭취를 자제 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
 - 배탈·설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 함
- 시험실에 시계가 있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
 - 계산, 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시계 등)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발견 될 시에는 부정행위 등으로 처리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람
- 시험실내 응시자 개인물품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응시자는 개인물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

- 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음
 - 답안카드는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채점

-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연필,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색깔과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필히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함
 - 답안카드는 구기거나 이물질로 더럽히는 것 금지
 - 답안카드에는 시험 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정답 외에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 가능
 -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답안카드 교체 가능
 - 수정테이프는 응시자가 요구 시 시험 감독관이 제공하며,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도 사용 가능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하며,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는 사용 불가
 -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함
 - 답안카드에 시험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 요망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필기시험 응시자 안내 동영상\(링크\)](#)

□ [2022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링크 공지사항 참고\)](#)

□ 부정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7에 의거하여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함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실기작품 및 그 제작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제지(시험기기를 포함한다)를 보고 자신의 답안카드(실기작품 및 시험기기로 작성하는 답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제작)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카드를 제출하는 행위
8. 시험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단, 문제지를 공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인쇄물
 -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1.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3. 시행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컴퓨터시험 중 시험기기를 외부 유출 또는 시험 종료 후 제출하지 않는 행위
1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응시자 준수사항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인국가 시험 부정행위자 등 처리 지침’ 등에 의거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함

응시자 준수사항의 기준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5.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제3조 제10호의 물품 제외)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7. 실기시험 시행 중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낙서, 그림, 메모 등의 형태로 종이 등에 적거나 신체에 기록하는 행위
 8. 그 밖에 원장이 정한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

기타 유의사항은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

5.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결정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 취소 가능

□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예정일

구분	일시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2022. 3. 8.(화) 10:00
제39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2022. 5. 31.(화) 10:00
제4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2022. 8. 23.(화) 10:00
제4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2022. 11. 22.(화) 10:00

합격자 확인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 방문접수자의 응시이력 확인 방법 : [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과거시험 정보찾기] - [실명인증]

-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휴대폰 문자(SMS)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 기재자에 한함)

6. 자격증 발급

□ 자격증 발급 절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에 의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자격증 발급 신청 제출서류 등 상세안내는 관할 시·도청으로 문의

7. 기타

□ 증명서 발급 안내

- 국시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증명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증명서는 위/변조 방지 바코드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원본 증명서를 복사할 경우 원본과 구분할 수 있는 복사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인터넷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수령한 기관은 국시원 홈페이지 원본확인 메뉴에서 원본의 진위여부를 확인 가능

이용안내

국시원 홈페이지에서는 2010년 이후 시행한 시험의 응시자에 한해 다음 서비스가 제공됨

- 성적 열람(과목별 취득 점수 및 평균 점수)
- 성적증명서·합격확인서 발급

* 2010년 이전 시행한 시험의 응시자는 전화(1544-4244)로 문의

수수료 안내

- 성적 열람 : 무료
- 성적증명서·합격확인서 발급 : 1,000원

신청 방법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 - [증명서 발급 신청]

※ 방문접수자의 응시이력 확인 방법 : [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과거시험 정보찾기] - [실명인증]

□ 증명서 발급 안내(링크)

□ 답안카드 열람안내

- 답안카드 열람(필기 시험에 한함)은 응시자 본인이 작성한 답안카드에 한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확인 가능
 - 답안카드 열람을 위한 **방문예약**은 희망일 1일 전 18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청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 - [답안카드 열람 방문신청]
 - 열람방법 : 국시원 별관 2층 고객지원센터 **직접 방문**
 -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예약 후 회신을 받은 응시자는 방문 희망일시에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국시원 별관 2층 고객지원센터에서 ‘답안카드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신속하게 답안카드 확인이 가능
 - 시험문제가 공개되는 시험의 경우 응시자가 직접 본인의 문제지를 지참하여야 하며, 국시원에서는 문제지를 제공하지 않음.
- ※ 방문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구의역 1번 출구)

□ 응시확인서 안내

- 응시확인서는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는 응시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없으며, 응시확인서 발급은 2011년 이후 시험부터 가능
- ※ 방문접수자의 응시이력 확인 방법 : [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과거시험 정보찾기] - [실명인증]

응시확인서 발급 절차

- **합격자 발표 전**
 - 로그인 > [면허·자격·증명서] > [응시확인서 발급] > 발급신청 > 담당자 승인 (발급 승인) > 본인 인증 후 발급 완료(출력 가능)
- ※ 발급 신청부터 출력까지 **7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합격자 발표 후

- 로그인 > [면허·자격·증명서] > [응시확인서 발급] > 발급 신청 > 본인 인증 후 발급 완료(출력 가능)

※ 해당 시험의 결시 응시자는 응시확인서 발급이 불가

※ 발급신청과 동시에 완료되어 출력 가능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률\(링크\)](#)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정보] - [출제자료] - [연도별 국가시험 합격률]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분석결과\(링크\)](#)

국시원에서는 매년 홈페이지에 직종별 분석 결과를 공지.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정보] - [출제자료] - [국가시험 분석결과] 에서 확인 가능

□ 고객상담센터(1544-4244) 운영

운영시간 :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시간 이외에는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질문하기 메뉴를 이용

2022년도 영양보호사 자격시험 종합 안내서

발행일 2022년 3월

발행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발행인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

1544-4244

www.kuksiwon.or.kr

mw@kuksiwon.or.kr